

#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27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정재 · 김광림  
박성중 · 김선동 · 박덕흠  
곽대훈 · 이채익 · 강석진  
신보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.

실제로 2017년 감사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건설업체의 64.6%가 공공 발주자로부터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업체의 61.1%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.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귀책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업체 중 78.9%는, 발주자와 체결한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

지정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,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.

이에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으로써,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
- 나.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.
- 다.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

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의신청에 있어,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(안 제28조제1항).

라.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 계약의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(안 제31조제3항 신설).

##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계약의 내용이 제2항에 반하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) 이상의 정부조달계약”을 “정부조달계약(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5조제2항에 반하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양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(是正)하기 위한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5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31조(심사·조정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5조제2항에 반하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심사·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